공고제 9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6월 12일

북아현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양 *모	양 *모 1990-09-10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길 (북아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5-31
양 *모	양 *모 1987-04-24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길 (북아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5-31